

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3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실명 : 주민자치과장 임 시 풍

나. 제안사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(대통령령 제15903호, 1998. 10. 1)이 2003년 8월 31일 폐지됨이 시달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이미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되었고, 화순군 제2의건국위원회 역시 해산되었으므로, 더 이상 본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
조례안

화순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회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